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0-28-126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20년 5월 19일

주 문

1.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피심인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공개하거나 첫 화면과 연결화면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



자',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고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해 공지하거나,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45,300,000원

나. 과 태 료 : 8,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기초 사실

- 1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전적 모바일 앱 ()을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이사	설립일자	자본금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평균
전체 매출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 2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신고 된 사업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2019.10.7.~8.)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

3 피심인은 견적 모바일 앱 ()
을 운영하면서 2019.10.8. 기준 견의 이용자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
회원 정보	[디바이스 정보] Device ID, Device 종류, Device 버전, Push Token, 앱버전 [광고 관련 정보] 광고 SMS/이메일 허용 여부 [필수정보(2019.9.월 이후 이용자만 해당)] 이메일, 출생년도, 성별, 닉네임 [견적, 상담요청 시 필수 정보] 연락처(내국인 휴대폰번호, 외국인 SNS ID), 이름		건
총 계			건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관계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4 피심인은 견적을 요청한 이용자로부터 관심부위, 성별, 출생년도, 특이사항 및 문의사항, 관심부위 사진을 수집하여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 획득 시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항목에서 '관심 부위 사진'을 누락한 사실이 있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고지하고 동의 받은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관심 부위가 눈, 코, 안면윤곽, 양악 등인 경우 얼굴이 확실하게 보이는 사진을 첨부하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화면 일부>

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를 소홀히 한 행위

- 5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공개하거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이용자는 앱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설정을 통해서만 개인정보 처리방침(링크)을 확인 가능

- 6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 피심인은 견적요청 내용 및 상담 신청 과정에서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7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사항 공개) 피심인은 2019. 10. 7. 조사일 기준, 시행된 '개인정보처리방침 버전3'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유 및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



- 8 피심인은 2019.10.8. 조사일 기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206,725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수 계산 >

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 9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 2. 25.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 하였으며, 피심인은 2020. 3. 10. 의견을 제출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 10 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1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



용 목적(제2호)',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제3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제4호)'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2012.9.)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에 대해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의 받을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여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12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 4가지 항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①누구에게 ②어떤 이유로 ③무엇을 제공하였고, ④제공받는 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보유하는 지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3 제27조의2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제1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제2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



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제3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처리방침에 포함한다)(제4호)',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제5호)',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제6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제7호)'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4 제27조의2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처리(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 및 제3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제1호)',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제2호)',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제3호)'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되, 그 명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



경 이유 및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제1호)’, ‘서면 · 모사전송 ·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제2호)’, ‘점포 ·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는 방법(제3호)’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2012.9.)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 대해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보유·관리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수집 및 이용 목적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개인정보를 최초로 수집하는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초 수집 단계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이용자가 숙지해야 할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얻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 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방법, 위탁 사항 등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관해 이용자가 언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라고 법 규정 취지를 해설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18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29조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시 명시적인 동의{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를 받지 않은 행위

19 피심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관심부위, 성별, 출생년도, 특이사항 및 문의사항, 관심부위 사진)를 수집하여 병·의원 등에 제3자 제공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 획득 시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항목(관심 부위 사진)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를 소홀히 한 행위

20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피심인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공개하거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21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 피심인이 건적요청 내용 및 상담 신청 과정에서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병·의원에 제3자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22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사항 공개) 피심인이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유 및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중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23 피심인이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206,725건을 파기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제공 동의	§24의2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 개인정보 항목 및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
	처리 방침	§27의2①	§14①1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공개하거나 첫 화면과 연결된 화면을 통해 공개하지 않은 행위
	처리 방침	§27의2②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
	처리 방침	§27의2③	§14②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유 및 변경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행위
	유효 기간	§29②	§16②	1년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 분리·보관하지 않은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피심인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공개하거나 첫 화면과 연결화면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고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해 공지하거나,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피심인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



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24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V. 과징금 부과

25 피심인은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제24조의2제1항)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6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과 제4항 [별표 8]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2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과징금 상한액 및 기준금액

가. 과징금 상한액

27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3의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중과실 여부

28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 이에 따를 때, 영리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심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30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1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조항은,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할 때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2 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의 결과가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 33 피심인의 전적 모바일 앱()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원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을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관련 매출액				

※ 자료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 34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 초과인(2012년~2019년)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을 가중한다.

- 35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36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7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원을 감경한다.

2. 과징금의 결정

38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별표 8] 2. 가. 1)(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원이나,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십만원 미만을 절사한 45,300,000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	최종 과징금*
원	필수적 가중 (50%, 원) 필수적 감경 (50%, 원)	추가적 가중 없음 추가적 감경 (10%, 원)	4,530만원
	→ 원	→ 원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실무요령'에 따라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미만은 십만원 미만 절사, 1억원 이상은 백만원 미만 절사함

VI. 과태료 부과

39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제1항,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2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2항제3호 및 제76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40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해서 1회 위반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29조제2항 위반에 대해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파. 법 제27조의2제1항 (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2항제3호	600	1,200	2,000
더. 법 제29조제2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76조 제1항제4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 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1 그러나 피심인은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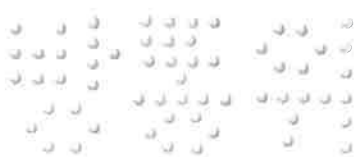
42 이에 따라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1항 위반 과태료에 대해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하고, 같은 법 제29조제2항 위반 과태료에 대해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 반 조 문	기 준 금 액	가 중	감 경	최 종 과 태 료
§27의2①	600만원	없음	300만원	300만원
§29②	1,000만원	없음	500만원	500만원
계				8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43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1항, 제29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8,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II. 결론

44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제64조의3제1항제6호(과징금) 및 제76조제2항제3호, 제76조제1항제4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5월 19일



위 원 장

한 상 혁



부위원장

표 철 수



위 원

허 욱



위 원

김 창 룡



위 원

안 형 환

